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30호로 2021년 12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칙으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 나. 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시험전형, 응시자격 등의 절차 및 서식(안 제7조~제20조)
- 다. 신규, 전보, 승진 등 임용에 관한 방법(안 제21조~제30조)
- 라. 공무원 평정 시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및 근무경력 등 가산점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및 제32조)

마.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41조)

바. 단체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4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2021.10.8. 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한 것으로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설치, 회의록의 작성, 심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2장인 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면접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등 응시자격,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 시험위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장은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 신규임용, 제2절 전보임용, 제3절 승진임용, 제4절 평정, 제5절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제6절 인사협의를 관하여 규정함.

○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2022.1.13. 시행)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도회의의 사무처장,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군·구회의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